

##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 12. 15.  
행정소방위원회

###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11월 13일  
충청북도지사
2. 회 부 일 자 : 2008년 11월 14일
3. 상정 및 의결일자  
제27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소방위원회(2008. 12.8)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원안)

###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곽임근)

#### 1. 제안이유

가.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을 개축·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감면대상으로 확대하여 기업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고

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여 저출산대책을 뒷받침하며

다. 현행 감면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사항에 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법령 표기 등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 개축·대수선에 대한 감면 신설

- 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을 개축 및 대수선하여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 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셋 이상 양육하는 자가 자동차를 취득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

### 다.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명확화

- 장애인이 이동상 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운영하는 당초 감면취지대로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만 장애인자동차로 인정
- 단서 조항 개정으로 감면대상을 명확히 규정

### 라. 하도급에 대한 용어정리로 감면대상 명확화

-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종 수급인을 포함한 개념으로 용어 정비
- 하도급업자를 하수급업자로 수정

## Ⅲ. 검토보고 요지

(행정소방전문위원 운영창)

## 1. 도세감면조례 개정배경 및 추진과정

행정안전부에서는 개별법령의 개정사항, 중앙정부의 세제정책변화 및 건의사항 등을 기초로 지방세법 제9조2)에 근거한 시·도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음.

### ▶ 도세감면조례 개정 추진과정

- 행정안전부에서 감면조례 표준안 마련(2008.8월초)
- 자치단체 의견 수렴(2008.9월초)
- 감면조례 표준안 확정 및 자치단체 시달(2008.9월말)

충북도에서는 행정안전부의 도세감면조례 표준안을 기초로 도세 감면대상을 검토·확정하여 금번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사료됨.

## 2. 개정조례안 항목별 개정내용 검토결과

※ 보고순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 순서로 하였음.

### ① 법률 제명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제2조제1항)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② 장애인(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명확화

(제2조, 제3조)

- 최초로 신청하는 1대에 대한 구체적 감면규정 마련
  - 당초 저소득계층 장애인의 최소한의 이동상 불편을 해소하고자 일정규모 이하의 자동차 1대에 한정하여 감면을 신설하였으나,

2) 지방세법 제9조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감면조례를 개정

※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의 감면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경우는 허가로 같음

- 舊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결정(행심 제2004-353호, '04.11.30)으로 2대의 자동차가 감면받는 사례 발생

※ 기존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만 감면받아 오다가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이를 취득·등록세 면제 대상으로 인정

- 당초 취지대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장애인용자동차로 인정하여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가 감면되도록 단서조항 신설

○ 장애인(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추정 제외 사유 추가

- 현재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있어 장애인과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 서로간의 등록전환의 경우에만 감면 추정을 제외하고 있으나,

- 장애인과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의 지분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감면 추정에서 제외되도록 사유 추가

**③ 주택에 대한 용어 정비** (제2조, 제4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 「지방세법」 제180조(정의) 등에서 건축물과 토지 외에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일괄하여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면조례상의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일괄 정비함

**④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정비** (제8조3호)

○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 및 기능 조정, 조직 통·폐합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

○ 건설교통부 ⇒ 국토해양부

**⑤ 천연가스 사용버스 관련 감면대상 명확화** (제10조제1항 및 제2항)

○ 현 규정으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천연가스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축소 해석 여지가 있음

○ 천연가스 사용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당초 감면 취지대로 조문

을 분리하여 명확하게 규정

**⑥ 주택에 대한 감면대상 명확화** (제12조제1항)

- 분양을 목적으로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 공동주택건축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 면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규정.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대상 명확화

**⑦ 하도급업자에 대한 용어 정리를 통한 감면대상 명확화** (제12조의2)

- 하도급업자에 대한 감면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종 수급인을 포함한 개념이므로 운영현황에 맞도록 용어 정비
  - ※ '하도급업자'는 최종 하수급인을 배제하는 용어임.

**⑧ 임대주택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1호, 제3항)

- 「임대주택법」 (전부개정 법률 제8966호, 2008.3.21)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0849호, 2008.6.20)에 따라 추징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용조문 수정

**⑨ 아파트형공장 조문 분리, 감면대상 명확화 등** (제17조의2)

-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에 대한 감면 추징제외 업종(제조업공장 또는 벤처기업)을 입주 중소기업자와 동일하게 연구개발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까지 확대 적용

※ 도세 감면조례를 특별·광역시세 감면조례 조문과 동일 정비

- 아파트형공장 감면 제외 부동산 범위 구체화
  - 현재는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가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 당초 감면 취지에 맞게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 승계취득시' 감면제외로 명확히 규정

**10 오지개발사업 관계 법령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 (제18조제1항제3호)

- 「오지개발촉진법」이 폐지(폐지 법률 제9008호 2008.3.28)되면서, 「농어촌정비법」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동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은 삭제

**11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조문 정비** (제19조제1항 및 제2항)

- 현재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과 관련,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만큼 감면을 제외하고 있으나,
- 현 감면조례상 제외규정 조문위치가 적절하지 않아 일부 과세대상(부동산 및 전동차)에만 한정·적용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감면 제외사유를 명확화

**12 신용보증재단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 (제23조제1항)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법률 제7558호, 2005.5.31)에 따라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용조문 수정

**13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에 대한 감면조문 삭제** (제25조)

- 지방세법('08.1.1 시행) 및 동법 시행령('08.2.29 시행) 개정으로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에 대한 감면이 신설되었으므로 중복 규정 정비

**14 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 개축·대수선에 대한 감면 신설** (제27조의2)

- 산업용 건축물에 대해 개축·대수선하는 경우 취득·등록세 면제  
※ 「산업단지 입주기업 애로 해소방안」으로 확정(국가경쟁력강화회의, '08.6월)

**15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감면 신설** (제30조의4)

- 출산장려 및 다자녀 양육지원을 위한 세제지원방안
-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셋 이상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50% 감면

※ 감면대상 자동차는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과 동일

### 3. 종합의견

금번 개정안은 도세 감면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하고,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일치시키는 한편, 지방세 감면과 관련하여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취지와 내용에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조례 제 호

##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한다.

제2조제3항 본문 중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항 단서 중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 등록한 국가유공자 등

이 이전받은 경우와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로 하고, 같은항 단서 중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가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를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 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주거용 부동산” 을 “주택” 으로 한다.

제8조제3호 중 “건설교통부” 를 “국토해양부” 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일반 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하거나 할부매입 등의 사유로 저당권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

를 면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60제곱미터 이하인” 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으로 한다.

제12조의2 제목 중 “하도급업자” 를 “하수급업자” 로 하고, 본문 중 “「소방법」” 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으로, “하도급업자” 를 “하수급업자” 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의한” 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으로 하고,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서” 를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 로 한다.

제14조제2호 및 제3호 중 “주거용 부동산” 을 각각 “주택” 으로 한다.

제15조제1호 및 제2호 중 “주거용 부동산” 을 각각 “주택” 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주거용 부동산” 을 “주택” 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삭제한다.

- ①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9조에 따라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

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은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은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

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참가업체를 포함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협동화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이외의 용도로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은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농어촌주택개량 등” 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 를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 로 하며, 같은조 같은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중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또는 민간출자분 및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을 제외한다” 를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 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제1항 중 “동법 제17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을 “같은 법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으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6개월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은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3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4(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건강가정기본법」제3조에 의한 가정으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입양아 포함) 셋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생략)</p> <p>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 대상자가 동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p> <p>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p>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주택----- -----.</p> <p>③ ----- ----- ----- -----</p>





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가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 4. (생략)

-----  
 -----  
 -----  
 -----  
 -----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 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 4. (현행과 같음)

제4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①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소유하는 그 농원안의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 (생략)

제8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생략)

1. ~ 2. (생략)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 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 7. (생략)

제1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일반 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이

제4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① -----

-----  
-----주택-----  
-----  
-----  
-----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국토해양부-----  
-----

4. ~ 7. (현행과 같음)

제1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일반 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생략)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및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에 의한 공무원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2.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149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 취득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된 때에는 그 20호부터

-----  
-----.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  
-----  
-----  
-----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  
-----  
-----.

2.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  
-----  
-----  
-----  
-----  
-----  
-----  
-----  
-----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생략)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및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에 의한 공무원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2.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건축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

-----  
-----  
-----.

② (현행과 같음)

1. -----  
-----  
-----  
-----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  
-----  
-----.

2.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p>월)이내에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 의무기간 내에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p> <p>제14조(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생략)</p> <p>1. (생략)</p> <p>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u>주거용 부동산</u></p> <p>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u>주거용 부동산</u>(「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p>	<p>----- -----,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 ----- ----- ----- -----.</p> <p>제14조(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 -----주택</p> <p>3. ----- ----- -----주택(----- ----- ----- -----</p>
---	--

다)  
 제15조(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생략)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  
 제16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시장정비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

----)  
 제15조(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1. -----  
 -----  
 -----  
 -----주택  
 2. -----  
 -----  
 -----  
 -----  
 -----주택-----  
 -----  
 -----  
 ---주택  
 제16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주택-----)  
 -----  
 -----

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 2. (생략)

③ (생략)

제17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제1항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

-----  
 -----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에 따라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

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 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 법시행규칙 별표 3의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

3.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및 동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② (생략)

<신설>

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은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 또는 벤처기

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은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참가업체를 포함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협동화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이외의 용도로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8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제18조(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① -----

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1. ~ 2. (생략)

3.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② ~ ③ (생략)

제19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전동차(「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또는 민간출자분 및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  
 -----  
 -----  
 -----  
 -----  
 -----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  
 -----.

1. ~ 2. (현행과 같음)

3. <삭제>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전동차(「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지

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  
기와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지하철  
공사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등록  
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  
동산과 전동차에 대하여는 공동시  
설세를 면제한다. <단서 신설>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  
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  
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법인등  
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  
다. <단서 신설>

③ (생략)

제23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  
하여 설립된 충북신용보증재단이  
동법 제17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  
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  
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하철공사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  
는 부동산과 전동차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  
연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은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  
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  
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법인등  
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  
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① -----  
-----  
같은 법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까  
지에 따른-----  
-----  
-----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 (생략)

제25조(자원봉사활동을 통한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자원 봉사활동을 통하여 무주택 영세민에게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단법인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축에 착공하지 아니 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자원봉사활동을 통한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삭제>

<신설>

제27조의2(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6월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은 면제

<신설>

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30조의4(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으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입양아 포함) 셋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

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 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p><u>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u></p> <p>1.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p> <p>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p> <p>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p>
--	--

## 관계 법령 발췌

### □ 지방세법

제7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및 제8조(수익 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 과세 및 일반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제112조(세율)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화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용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5. 고급선박 : 비영업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6. 삭제 <2000.12.29>

##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9.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0.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1.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 □ 임대주택법

제16조(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1.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2.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중 제26조에 따라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 간의 매매 등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매각 요건 및 매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부도임대주택등을 다른 임대사업 자가 매입하려면 임대주택의 향후 관리계획,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변제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입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

1.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양전환 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

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

나. 가목 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인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3.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만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 □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9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육성) 시장·군수는 농어촌의 부존자원과 유희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이하 "특산단지"라 한다)를 육성할 수 있다

## □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산지가공산업의 육성) ① 농림부장관은 농산물의 생산지에서 농산물을 세척·박피·절단 등 단순가공하거나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및 민예품(이하 "농산물가공품"이라 한다)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농산물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수출촉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자가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위한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설치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계획

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동의·승인·해제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의 허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 제한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
7.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 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의 허가 및 신고
8.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행위제한의 허가
10.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11.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12.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13.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④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

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2.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비관리청의 공사 시행,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 중 그 권한이 위임되지 아니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 (자금의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명인에 의한 수산전통식품의 가공 또는 그 기능의 전수
3. 수산전통외식산업의 개발 및 보급
4. 수산물 가공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5.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한 포장 자재·시설 및 자동화 장비의 매입
6. 그 밖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

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아파트형공장"이라 함은 동일건축물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의5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 ①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6.3.3>

1. 제조업, 연구개발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① 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는 자는 그 협동화실천계획에 형질변경이나 기반시설공사를 수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단지조성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 승인을 하려면 미리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업무) 재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3.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4. 경영지도
5. 구상권의 행사
6.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은 것
7. 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

## □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4.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참 고 자 료

### 주요 개정사항 (신설 2, 확대 1, 축소 1, 기타 11)

내 용	신 설	확 대	축 소	기 타
▣ 특수임무수행자 관련 법률 제명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제2조 제1항)				○
▣ 국가유공자·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명확화 (제2조 제3항, 제3조 제1항)			○	
▣ 주택에 대한 용어 정비 (제2조 제2항, 제4조 제1항, 제14조 제2호 및 제3호, 제15조 제1호 및 제2호, 제16조 제2항, 제18조 제1항)				○
▣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제8조 제3호)				○
▣ 천연가스 사용버스 관련 감면대상 명확화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
▣ 주택에 대한 감면 대상 명확화 (제12조 제1항)				○
▣ 하도급업자에 대한 용어 정리를 통한 감면대상 명확화 (제12조의2)				○
▣ 임대주택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2항 제1호, 제3항)				○
▣ 아파트형공장 조문분리, 감면대상 명확화 및 추정제외 업종 추가 (제17조의2)		○		
▣ 오지개발사업 관계 법률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 (제18조 제1항 제3호)				○
▣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조문 정비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
▣ 신용보증재단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 (제23조 제1항)				○
▣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에 대한 감면조문 삭제 (제25조)				○
▣ 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 개축·대수선에 대한 감면 신설 (제27조의2)	○			
▣ 출산장려·양육지원을 위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감면 신설 (제30조의4)	○			